

第 31 回達西區議會(定期會) 議會本會議會議錄(附録) 第 2 號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目 次

1. 大邱直轄市達西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7 面

2. 大邱直轄市達西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面

3. 大邱直轄市達西區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7 面

4. 94年度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案) 25 面

5. 95年度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案) 28 面

 • 內務委員會 審查報告書

6. 大邱直轄市達西區一般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1 面

 • 社會都市委員會 審查報告書

대구직할시 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1. 29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4. 11. 19

다. 회부일자 : 94. 11. 24

라. 상정일자 : 94. 11. 28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총무과장 김치권)

가. 제안사유

- 실제 행정 행위자와 대외적인 명의가 다름으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대구직할시 내부위임규정이 폐지되고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도록 대구직할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됨.
- 지금까지 시장 직인을 사용하던 자동차관련 민원서류가 구청장 직인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세무민원전용 구청장직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직인을 조각 사용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기존의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을 "제1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으로 "세무민원 전용 구청장 직인"을 "제2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으로 개각하고 기존의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과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직인"을 폐기(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백창기)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구직할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이 대구직할시 훈령 제878호(94.9.30) 폐지됨에 따라 94.11.1부터 내부위임에서 구청장 권한 위임사무로 대구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951호(94.9.30) 개정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시장 공인을 사용하던 각종 민원관련 서류가 구청장공인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 현재 세무·자동차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 기존 민원실전용 구청장 공인과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을 전면 폐기하고 제1민원실전용, 제2민원실전용 구청장 공인으로 개각 하려는 것임.
- 그리고 구청장전용 대구직할시장 공인비치사용에 대한 조항이 대구직할시공인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구공인조례에 [별표 2]에도 공인모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구조례(별표 2) 구청장전용 대구직할시장 공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 본 조례개정은 실제 행정행위는 구청장이 하고 대외적인 명의는 시장공인을 사용함으로써 행정행위자와 명의가 서로 달라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권한위임되므로써

각종 민원관련 서류가 구청장공인을 사용하게 되어

- 현재 종합민원실의 민원실전용 구청장공인과 세무·자동차 민원실의 세무민원전용 구청장공인을 폐기시키고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공인과 제2민원실전용 구청장공인을 개각하여 공인관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며
- 또한 구청장전용 대구직할시장공인 사용 및 모형규정이 대구직할시공인조례와 달서구조례에 [별표 2] 각각 규정되어 중복성이 있으므로 구조례에 있는 [별표 2]를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권한위임 사무의 범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권한과 책임이 함께 위임될 수 있도록 요구함.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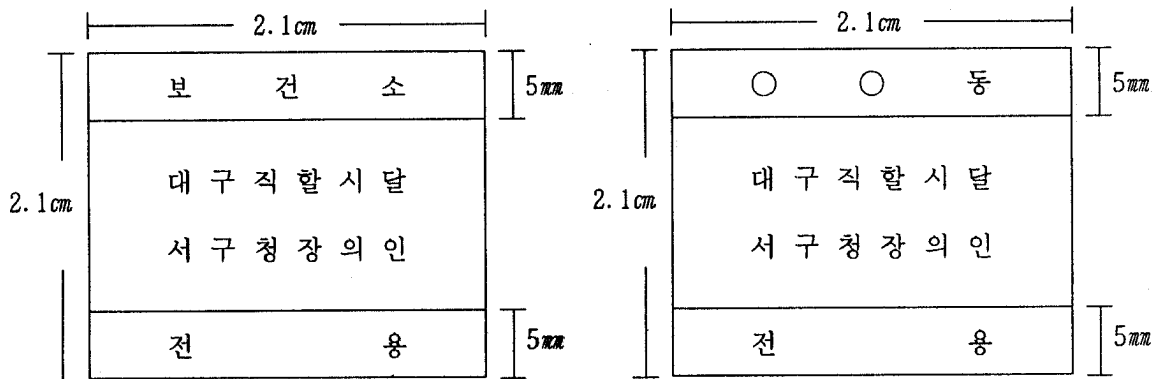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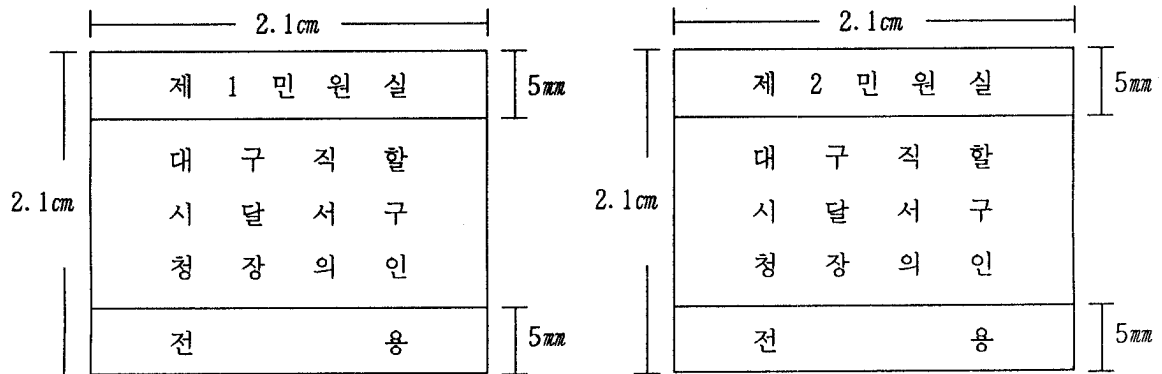
제2조제3항중 "민원실·세무민원전용"을 "제1민원실·제2민원실 전용"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안)
<p>[별표 4]를 [별표 2]로</p>	
<p>[별표 3]</p>	<p>[별표 3]</p>
<p>[별표 4]</p>	<p><삭 제></p>